

●환경부령 제840호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9년 12월 31일

환경부장관 인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환경부령 제7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 중 “2020년 1월 1일”을 “2021년 1월 16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화학물질 등을 양도하는 자가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화학물질의 구성성분, 함유량 등을 영업비밀로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환경부령 제7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시행일인 2020. 1. 1.을 이와 유사한 제도로써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는 자가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영업비밀로서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규정의 시행일인 2021. 1. 16.에 맞추어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변경하려는 것임. <환경부 제공>

●환경부령 제841호

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9년 12월 31일

환경부장관 인

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4항제3호 중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(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)”을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)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단서 중 “국립공원관리공단”을 “국립공원공단”으로, “시·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중 “○○○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”을 각각 “○○○국립공원사무소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